<u> </u>	_	보도지	수도권마	수도권매립지 종료	
皆州北上之り村	배포일자	2021년 8월 총		환경특별시 인천	
담당 부서 생활보장과	담당자	• 생활보장팀정 • 담당자		<b>3</b> 440−1551 <b>3</b> 440−1555	
사진	□ 없음	음 ■ 있음	참고자료	□ 없음	■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	시 보도하여 결	두시기 바랍니	니다.	

#### 인천시, 10월부터 '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' 전면 시행

-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로서 큰 의미 -
  - 8.23일부터 신청,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·장제·해산급여 지원 -
  - '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'위해 더욱 촘촘히 살필 것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'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'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.5%이며, 인천시는 5.3%로 8개 특·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.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.1%, 2020년 4.8%, 2021년 7월 기준 5.3%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.

이에, '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'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,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 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.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▲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% 이하 ▲재산기준 1억3천5백만 원 이하(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) ▲부양의무자 기준(소 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)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.

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▲ 1인 가구 274,175원 ▲ 2인 가구 463,212원, ▲ 3인 가구 597,593원 ▲ 4인 가구 731,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%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, ▲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▲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.

시는 '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' 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, 현수막, 카드뉴스 등 온·오프라인 홍보와 문자,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.

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"「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」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'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'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"고 말했다.

'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'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〈붙임〉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부.

참고

###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

□ 사업기간: '21. 10~

□ 지원대상: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가구

\*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(인천형 포함)생계지원 대상자 제외

□ **선정기준** : 소득평가액 기준, 재산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

○ (소득평가액)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

(단위: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중위소득 (2021년)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인천형선정기준 (중위40%이하)	731,132	1,235,232	1,593,580	1,950,516	2,302,949	2,651,441	2,998,879

- O (재 산)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
- \* 선정제외 :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, 100%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
- (부양의무자) 고소득(연1억, 세전) 또는 고재산(9억)이 아닌 경우
- □ **지원내용** :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, 해산·장제급여
  - (생계급여)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%(정액지원)

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인천형 현금급여	274,175	463,212	597,593	731,444	863,606	994,291

O (해산·장제급여) 출산시 70만원, 사망시 80만원



##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

##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# 10월 시행!

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대상

- · 신청기간 2021. 8. 23. (월)부터
- · 소득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- · 재산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하
- ·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
- · 지원내용 생계급여, 해산·장제급여 지원
- · 신청 및 상담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⊗단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(연1억, 세전) 또는 고재산(9억)이 아닌 경우 지원

